양재・우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시 개포4동(포이동) 포함에 관한 청원

검 토 보 고

1. 경과

○ 청 원 자 : 김성태 외 13개 직능단체 대표 13명

○ 소개의원 : 김현기(행정자치위원회)

○ 접수일자 : 2016. 11. 8. (54번)

○ 회부일자 : 2016. 11. 10.

2. 청원요지

○ 서울시는 2016. 8.3 양재, 우면, 개포동 일대 300만㎡에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혁신 거점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이 일대를 '지역특화발전특구'로 지정해 R&CD 공간을 확충하고,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15,000여개를 창출하는 '양재 Tech+City 조성계획'을 공표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이 일대 전체를 '지역특화발전특구'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 함. 이에 양재2동과 동일 생활권이며 벤처기업의 발상지인 옛 포이동(개포4동)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포함하여 지정해줄 것을 요청함

3. 청원소개의견 요지(소개의원 : 김현기 의원)

○ 서울시는 2016. 8. 3. 양재동, 우면동, 개포동 일대 300㎡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R&CD 공간을 확충하고 "양재 Tech-City 조성 계획"을 공표하였음.

○ 서울시는 "양재 Tech-City 조성 계획"에 개포4동(옛 포이동)을 포함하였으며 개포4동은 양재2동과 동일한 생활권이라는 점과 개포4동이 벤처기업의 발상지로의 역사와 상징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열악한 개포4동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특화발전지구 지정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.

4. 검토의견

○ 서울시는 「양재 Tech+City 조성계획」을 통하여 양재·우면 지역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(ICT) 인프라가 결합된 서울의 대표 도심형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임.

○ 「양재 Tech+City 조성계획」의 구체적 실현 방안은 제7대 실행전략과 4대 권역별 공간계획이며, 제7대 실행전략으로 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 ③ 유통업

무설비 해제 허용 ④ 청년문화 특화공간 조성 ⑤ 교통·보행환경 개선 ⑥ 맞춤형 앵커시설 조성 ⑦ 지원조직 및 거버넌스,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하고 있음.

○ 또한 4대 권역별 공간계획은 양재·우면 지역을 ① R&CD 코어권역, ② 지역특화혁신권역, ③ 지식기반상생권역, ④ 도시지원복합권역 4대 권역으로 나누어 7대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.

< 양재·우면지구 _ 권역구분 및 공간계획 >

○ 「양재 Tech+City 조성계획」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 임시적으로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양재·우면 일대 부지 전체를 내년 상반기 '지역특화발전특구'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.

- '지역특화발전특구'로 지정되면 R&CD 연구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 앵커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용적률·건폐율을 최대 150% 완화하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됨

○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[1)]

○ 현재 서울시는 내년도에 양재·우면 지역의 특구 지정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인 서초구·강남구와 협의를 추진 중이고 서초구는 지역특화사업계획의 수립을

---

1) **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(특구의 지정신청)** ①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(이하 "특구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,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(특구의 지정 등) ①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(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.

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서초구와 공동신청을 계획하고 있음.

○ 한편, 서울시의 「양재 Tech+City 조성계획」에 따르면 지역특화혁신권역으로 이미 개포 4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나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, R&CD 특구로서 장소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사업(가로 전시장, 이벤트, 가로예술, 창업카페 조성 등)을 추진할 예정임.

○ 또한, 도시계획국에서 실시한 「양재·우면 R&D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」('15.4 ~ '16.8)에 따르면 개포 4동은 양재 2동과 함께 중소기업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중소R&D 기업 스케일업(Scale-Up) 강화, 특화거리 조성 및 상징물 설치 등의 육성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.

○ 이처럼 개포 4동이 「양재 Tech+City 조성계획」에 따라 지역특화혁신권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도 「양재 Tech+City 조성계획」에 따라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서초구와 강남구의 공동신청 추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등 본 청원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.

○ 따라서 본 청원은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른 특구지정 신청권자는 기초자치단체이고 지정권자가 중소기업청이므로 서울시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청장과 서초구청장 및 강남구청장에게 본 청원의 결과를 이송하여 개포 4동이 포함된 특구지정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.